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전자신청에 있어 자격자대리인이 자필서명 정보를 작성하는 방법과 방문신청 및 전자신청의 경우 자필서명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어 이를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활용하여 인터넷 등기소에서 자필서명 정보 양식이 자동생성 되어 제공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3.다. 신설)
- 인터넷등기소에서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적 형태로 자필서명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규정함(안 3.라.(2) 신설)
- 전자신청의 경우 추가된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4.다.)

3.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 규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에 다.를 라.로 하고, 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가.와 나.에 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3.라.(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면으로 자필서명 정보를 작성할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본인 고유의 필체로 별지 제1호 양식 하단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라.(2) 중 “자필서명 정보가”를 “방문신청의 경우 자필서명 정보가”로 하여 (2)를 (4)로 하고, 3.라.에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3.다.에 대한 자필서명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의 양식에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적 형태로 직접 기재(이하 ‘전자자필서명 정보’라 함)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예시: ① PC에 연결된 서명전자패드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식 ②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전자펜, 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식 등)

(3) 자필서명은 그 이미지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한

다.

4.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전자신청의 경우

4.다.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한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거나 사진촬영한 파일에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이하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라 함)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2) 전자자필서명 정보는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3.(다)에 의해 제공하는 별지 제1호의 양식에 자격자대리인이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양식을 출력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1)에 의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접수되는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3. 자필서명 정보의 작성 방법 가. 부동산표시의 기재 (생략) 나. 등기의무자의 기재 (생략) <신설> 다. 자필서명 방법 등 (1) <u>자필서명은 자격자대리인이 별지 제1호 양식 하단에 본인 고유의 필체로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자필서명 이미지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u> <신설>	3. 자필서명 정보의 작성 방법 가. 부동산표시의 기재 (현행과 동일) 나. 등기의무자의 기재 (현행과 동일) 다. <u>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가.와 나.에 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u> 라. 자필서명 방법 등 (1) <u>서면으로 자필서명 정보를 작성할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본인 고유의 필체로 별지 제1호 양식 하단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u> (2) <u>3.다.에 대한 자필서명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의 양식에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적 형태로 직접 기재(이하 ‘전자자필서명 정보’라 함)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예시: ① PC에 연결된 서명전자패드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식 ②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전자펜, 손</u>

<신 설> (2) <u>자필서명 정보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을 만나게 하여 그 사이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자필서명 정보에 페이지를 표시하고 각 장마다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u> 4.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 방법 가. (생 략) 나. (생 략) 다. <u>전자신청의 경우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한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1호 에 따른 자격자대리인의 개인인증서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u> <신 설>	<u>가락 등을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식 등)</u> (3) <u>자필서명은 그 이미지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u> (4) <u>방문신청의 경우 자필서명 정보가 -----</u> ----- ----- ----- ----- --. 4.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 방법 가. (현행과 동일) 나. (현행과 동일) 다. <u>전자신청의 경우</u> (1) <u>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한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거나 사진촬영한</u>
--	--

	<u>파일에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이하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라 함)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u>
<신 설>	<u>(2) 전자자필서명 정보는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u>
<신 설>	<u>(3) 인터넷등기소에서 3.(다)에 의해 제공하는 별지 제1호의 양식에 자격자대리인이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양식을 출력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1)에 의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u>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640